

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

다.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(이하 “보험사업자”라 한다)이 보험 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「신탁업법」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

②資産流動化에 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(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포함한다. 이하 “信託會社”라 한다)”를 “(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신탁회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◇신탁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감독위원회는 신탁업을 인가함에 있어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대출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은행 외의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신탁회사의 상호사용, 임원의 자격,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및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7월 29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
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

◎法律 第7616號

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

證券去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證券去來法”을 “증권거래법”으로 한다.

제5장제1절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3(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)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

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

4의3.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증권거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식취득을 통하여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,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국회에서 의결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7월 29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
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

●法律 第7617號

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

先物去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) ①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